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

2025 **울산광역시 북구**

기업투자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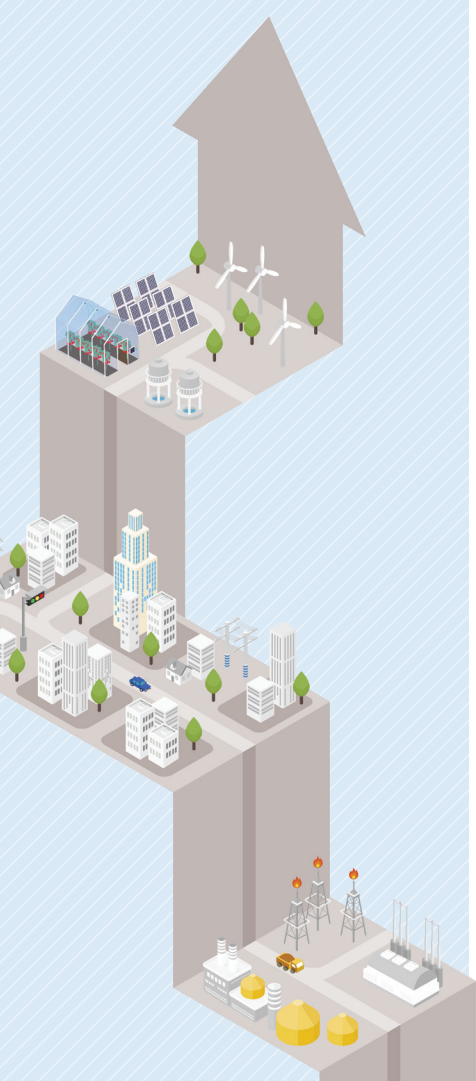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북구
www.bukgu.ulsan.kr

2025 울산광역시 복구

기업투자 지원제도

CONTENTS



01 울산광역시 복구 투자 인센티브

| | |
|-----------------------|---|
| 지원절차 | 3 |
| 지원내용 | 3 |
| 특별지원 | 3 |
| 조세감면 | 4 |
| 참고 울산광역시 지원 내용 | 4 |

02 지원관련 유관기관

| | |
|-----------|---|
| 지원관련 유관기관 | 7 |
|-----------|---|

03 투자입지 현황

| | |
|---------|---|
| 국가산업단지 | 8 |
| 일반산업단지 | 8 |
| 농공단지 | 8 |
| 복구 산단현황 | 9 |

04 공장 인·허가

| | |
|--------------|----|
|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 10 |
| 개별입지에 입주할 경우 | 11 |

05 기타 지원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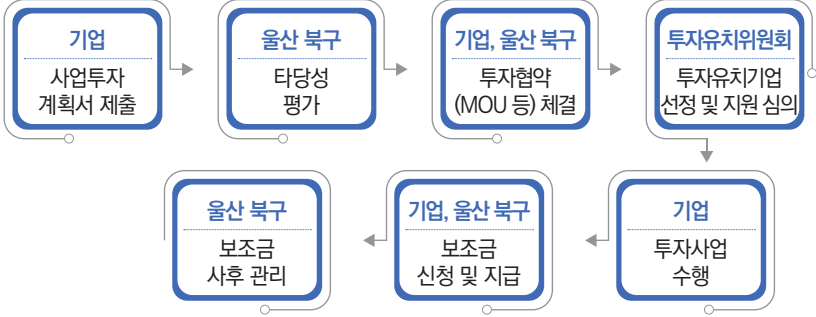
| | |
|---------|----|
| 기타 지원시책 | 12 |
|---------|----|

01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 인센티브



지원절차

ULSAN METROPOLITAN CITY BUKGU



지원내용

ULSAN METROPOLITAN CITY BUKGU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협약용자금 이차보전금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10인 이상 신규 상시 고용 | 토지 분양, 임대 등 부지매입비용 및 신·증설에 소요된 건축 및 설비비용의 금융자금 이차차역 연 2%까지 보전 | 기업당 5천만원 |
| 고용보조금 | | 신규로 10명을 초과 상시고용하는 경우 초과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 | 기업당 3천만원 |
| 전기요금 지원금 | |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이내 | 기업당 1천5백만원 |
| 판로개척 지원금 | |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 | 기업당 1천만원 |



특별지원

ULSAN METROPOLITAN CITY BUKGU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인원 150인 이상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용자금이차보전금, 고용보조금, 전기요금 지원금, 판로개척 지원금 ※ 지원규모 등은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후 결정 |

문의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052-241-7713, 7715



| 구분 | 감면대상 | 감면율(%) | 근거 |
|-----------------|--------------------------------------|-------------------------------------|---|
| 산업단지 |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시행사) |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
| | 산업단지 분양 · 임대용 부동산 (시행사) |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
| | 산업단지 조성 후 직접사용 부동산 |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5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
| | 공장 등 건축용 부동산(입주기업) | • 취득세 : 75% • 재산세 : 75%(5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 제1항 |
| | 공장 등 대수선(입주기업) | • 취득세 : 4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 제2항 |
| 농공단지 | 농공단지 내 대체 입주자 | • 취득세 : 100% |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 |
| 벤처기업 및 신기술 창업 등 | 벤처기업 및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분양 · 임대목적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
|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축 또는 증축 | • 취득세 : 50% • 재산세 : 60%(3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 |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신증축 후 직접사용, 분양 · 임대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 35% • 재산세 : 35%(5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
| |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 영위하는자 한정) | • 취득세 : 35% • 재산세 : 35%(5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
| 창업 (벤처)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 • 취득세 : 75% • 재산세 : 3년 면제 2년 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2항 |

문의 취득세 : 시청 세정담당관(052-229-2615) 재산세 : 북구청 세무1과(052-241-7522-4)



1. 대규모 국내투자기업 특별지원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 - 지원규모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후 결정 (100억원 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 투자금액의 5% 범위 내 (다만, 입지지원, 시설보조금 지원 등 중복지원 안됨) • 도로 · 항만 · 용수시설 · 하수 및 폐수시설 · 전기 · 통신 · 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 그 밖에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2.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지원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외지역에서 관내지역으로 이전 또는 관내 창업 기업 중 상시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10인 이하 기업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통해 지원 가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혁신형 또는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영위 중소기업 -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매입)가액의 15% 범위 내 • 건물 매입가액의 15% 범위 내 • 건물 신축비의 15% 범위 내 •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범위 내 | 기업당 1억원 |
| | • 장비구입비의 30% 범위 내 | " |
| | • 신규 채용 상시고용 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 6개월 범위 내 지급 | 예산 범위 내 |
| | • 투자기업 소속 근로자 관내로 주민등록 이전 시 투자기업 소속 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각 100만원씩 최대 5명까지 한 차례 지원 | " |

3. 국내투자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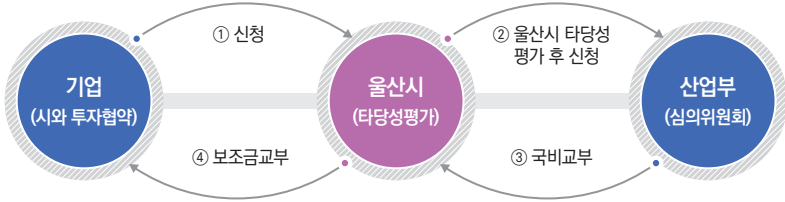
☑ 지원대상 :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기업

☑ 지원기준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입지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 비용 20억원 초과 •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 신청 | • 20억원 초과액의 20% 범위 내 지원 | 기업당 30억원 |
| 시설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및 설비 비용 10억원 초과 •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 신청 | • 10억원 초과액의 20% 범위 내 지원 | 기업당 30억원 |
| 고용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5년 이내, 20인 초과 신규 고용 •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경과 후 신청 | • 6개월 범위 내 초과 1인당 월 50만원 | 예산 범위 내 |
| 교육훈련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5년 이내, 20인 초과 신규 고용, 1개월 이상 교육 실시 •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경과 후 신청 | • 6개월 범위 내 초과 1인당 월 50만원 | 예산 범위 내 |
| 이주 정착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업 소속 근로자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는 경우 지원 •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각 100만원씩 최대 5명까지 한 차례만 지원 •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 신청 | • 투자기업 소속 직원 1인당 최대 500만원 | 예산 범위 내 |
| 특례지원 | • 신규고용 25명 이상일 경우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 • 신규고용 인원에 따라 1%P ~ 10%P 가산 | 예산 범위 내 |

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 지원유형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 등(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 ☑ 지원범위 : 기업당 국고보조금 최대 200억(시비 별도 매칭)
- ☑ 지원절차



☑ 지원기준

| 구분 | 수도권기업의 관내이전 | | 관내 신·증설 투자 |
|-----|--|-------|---|
| 대 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영위 법인(공장 or 본사, 연구소) • 상시고용 30인 이상(기존사업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 • 상시고용 10인 이상(기존사업장) |
| 조 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과 동일한 소분류 • 상시고용 30인 이상(투자사업장)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할 것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장 신설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의 10%*(최소 10명) 이상 * 중소20명, 중견 30명, 대기업 70명 이상 시 요건 충족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 내용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설비보조금 |

※ 입지계약 체결일 또는 착공신고 이전에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의 활동을 통해 유치한 기업 해당

※ 국비 보조비율 상위(45%)· 중위(65%)· 하위(75%)· 특별지역(75%)

5.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

-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 ☑ 지원유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증설 투자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방역·면역 관련 사업)
-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 ☑ 지원범위 : 기업 당 국비 최대 600억원(시비 별도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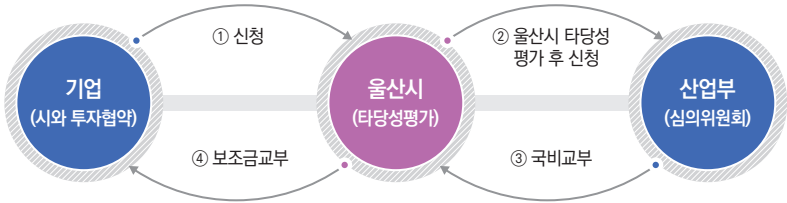
※ 사업장당 국비기준 300억원 이내(투자보조금+이전보조금 합산 기준)

※ 국가 첨단전략기술 * 분야 : 사업장당(수도권 200억원, 지방 400억원)

* 국가전략기술 : 「소득법」 시행령 별표7의2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 핵심기술

* 첨단전략기술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

☑ 지원절차



* 타당성평가 총점 60점 이상(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경우 50점 이상) 산업부 신청 가능
* 지원결정시 1차분(70%) 사업 착공 시 집행, 2차분(30%)은 사업완료 정산 후 집행

☑ 지원기준

| 구분 | 국내복귀기업 | | | |
|-------|---|-------|-------|-------|
|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대·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 별도추진) | | | |
| | <p>선정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소분류 기준) 국내사업장 신·증설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2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첨단산업,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협력형 복귀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 국내복귀 진행기업의 이행완료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업장 : 청산·양도·축소 선정일 기준 해외 사업장 4년 이내 - 국내사업장 : 신·증설 완료 5년 이내 | | | |
|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사업장 폐쇄, 매각, 임대, 축소시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 ※ 투자금액, 신규고용 요건 없음 | | | |
| 내용 | <table border="1"> <tr> <td>입지보조금</td> <td>설비보조금</td> <td>이전보조금</td> </tr> </table>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이전보조금 |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이전보조금 | | |

※ 보조금 신청 또는 착공신고 이전에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의 활동을 통해 유치한 기업 해당

※ 울산광역시 투자 인센티브의 경우 울산광역시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7852~3)로 문의 바랍니다.

02 지원관련 유관기관



| 기관명 | 주요업무 | 연락처 |
|-------------------|-------------------|--------------------|
|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 국가산업단지 입주지원 | 070-8895-7717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 283-7222 |
| 울산테크노파크 | R&D 지원사업 | 219-8500(대표) |
|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 210-0200(대표) |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창업 및 벤처 지원업무 | 210-0011(대표)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 창업 및 중소기업 자금유자 지원 | 703-1100(대표) |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 | 이화산업단지 입주지원 | 229-8653 |
|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 | 기술 보증 지원업무 등 | 0507-1479-7903(대표) |
| 울산상공회의소 |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운영 | 228-3072~4 |
| (사)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회 | 중소기업 정보공유 및 협력 | 288-3333(대표) |
| 울산신용보증재단(북구)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 | 289-2300(대표) |

03 투자입지 현황



국가산업단지

ULSAN METROPOLITAN CITY BUKGU

| 산업단지명 | 조성시기 | 면적(천㎡) | 유치업종 | 입주 공장수 | 문의처 |
|-----------------|-----------|--------|-------------------------|--------|---------------------------------------|
|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 '78 ~ '34 | 48,468 |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 1,082 | 070-8895-7873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

참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 공장용지 조성사업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연암동 일원
- 면적 : 375,318㎡(약113천평)
- 사업기간 : 2005.05. ~ 2025.12.31.(예정)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공영개발)
- ※ 분양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Tel.1600-1004)



일반산업단지

ULSAN METROPOLITAN CITY BUKG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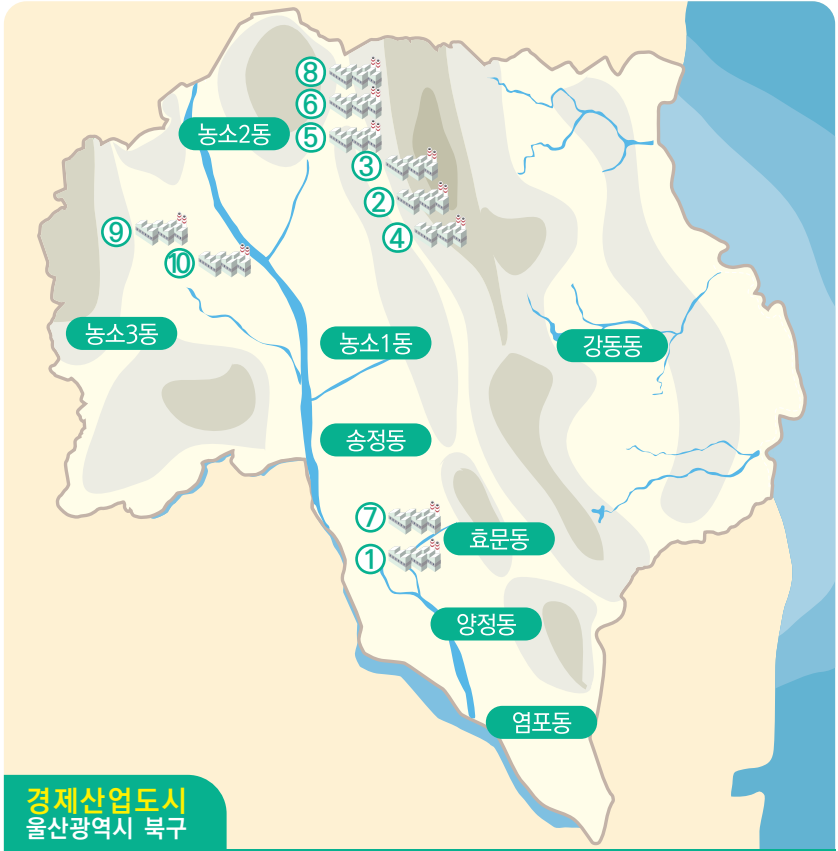
| 산업단지명 | 조성시기 | 면적(천㎡) | 분양가(3.3㎡당,만원) | 입주 공장수 | 협의회 연락처 |
|---------|-----------|--------|---------------|--------|----------------|
| 매곡1차 | '02 ~ '06 | 556 | 48 | 76 | 052-219-4680~1 |
| 매곡2차 | '09 ~ '14 | 76 | 112 | 15 | |
| 매곡3차 | '09 ~ '14 | 158 | 112 | 26 | |
| 중산1차 | '05 ~ '09 | 128 | 105 | 30 | 052-716-2310 |
| 중산2차 | '08 ~ '14 | 364 | 112 | 65 | |
| 모듈화 | '01 ~ '13 | 863 | 72 | 38 | 052-283-2380 |
| 이화산업단지 | '07 ~ '22 | 694 | 965 | 1 | . |
| 모바일테크밸리 | '16 ~ '25 | 315 | . | 8 | ('25.6월 준공예정) |



농공단지

ULSAN METROPOLITAN CITY BUKGU

| 산업단지명 | 조성시기 | 면적(천㎡) | 입주 공장수 | 협의회 연락처 |
|-------|-----------|--------|--------|--------------|
| 달천 | '97 ~ '99 | 260 | 102 | 052-282-7900 |



01
울산미포국가
산업단지



02
매곡1차
일반산업단지



03
매곡2차
일반산업단지



04
매곡3차
일반산업단지



05
중산1차
일반산업단지



06
중산2차
일반산업단지



07
모듈화
일반산업단지



08
이화
일반산업단지



09
달천농공단지



10
모바일테크밸리
(사업준공 2025. 6.예정)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ULSAN METROPOLITAN CITY BUKGU

1.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

☑ 관련법령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항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34조, 제35조

☑ 구비서류

산업단지입주 계약(계약변경)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계약신청의 경우)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구비서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3.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및 완료신고 처리절차





1. 공장 등록 신청

☑ 관련법령 및 대상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 상 : **건축면적 500㎡미만**의 공장건축물

☑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등록신청 처리기한 : 7일)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법령 의견조회(공장등록부서) → 현장확인(공장등록부서)
 → 공장등록(공장등록부서)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민원신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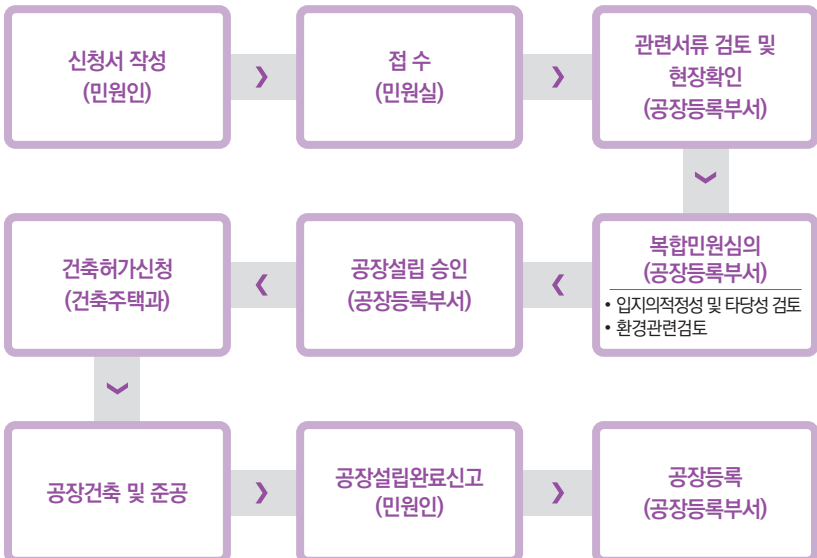
2. 공장설립 승인 신청

☑ 관련법령 및 대상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대 상 : **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건축물

☑ 구비서류 : 공장설립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 (각종 인·허가 의제를 받는 경우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따른 첨부서류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사용 하는 경우 사용권 증명 서류

☑ 처리절차(설립승인 처리기한 : 20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7일)





0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ULSAN METROPOLITAN CITY BUKGU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신청기간 : 2025. 2월중(공고 예정)
※ 기간 내 자금 신청 미달 시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및 접수 가능
-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분류번호 C)
- ✔ 용자규모 : 170억원(업체당 2억원 이내)
- ✔ 지원내용 : 융자금 이자 중 3%를 2년간 지원(2년 거치 일시상환)
- ✔ 접 수 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1층
기업민원처리센터(☎283-7222)



0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ULSAN METROPOLITAN CITY BUKGU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신청기간 : 2025년 2월/7월(공고 예정)
※ 기간 내 자금 신청 미달 시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및 접수 가능
-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접수)
- ✔ 지원대상 : 복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업체
- ✔ 제외업종 : 금융·보험업, 도박·안마·주점 등 사치 및 향락적, 투기 조장 업종
- ✔ 용자규모 : 100억원(업체당 6천만원 이내)
- ✔ 지원내용 : 융자금 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
(2년 거치 일시상환, CD금리91일물 + 가산금리 2% 이내)
- ✔ 문 의 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1층 기업민원처리센터(☎283-7222)

03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ULSAN METROPOLITAN CITY BUKGU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산-학-연 연계로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형 기업 육성

- ☑ **사업기간** : 2025. 2월~12월(공고 예정)
- ☑ **지원대상** : 부품, 소재, 공정개선 등 기술개발을 원하는 중소기업
-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고급화 지원, 국내외 특허·인증 지원, R&D 역량강화 멘토링 지원 등
- ☑ **문의처** : 울산테크노파크(☎219-8644)
※ 2025년 사업 계획 확정 시 지원내용 등 세부내용 별도 공고



04 스타 비즈니스 센터 운영

ULSAN METROPOLITAN CITY BUKGU

기술력과 시장성이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여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성장추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복구를 선도할 스타기업 육성공간 제공

-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입주기업 계약 만료 시 별도 공고
- ☑ **지원규모** : 총 15개사 정도
- ☑ **지원내용** : 사업공간 제공 및 성장추진 프로그램 운영 등
※ 사무공간 : 매곡산단 내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2층, 3층(매곡산업로 35)
-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 입주유형 | 허용업종 | 사업자등록유무 | 선정기업 수 |
|----------------|---|---------|--------|
| 예비스타기업 육성실(3층) | 제조업 또는 제조지원서비스업 (임대, 음식·숙박, 유통, 관리업 제외) | 필수 | 5개사 |
| 1인기업육성실(2층) | | 무관 | 10개사 |

- ☑ **문의처** : 울산테크노파크(☎219-8644)

05 부품사 기술전환 지원

ULSAN METROPOLITAN CITY BUKGU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자동차 부품의 기술확보, 제품개발 등 자동차 부품사 기술전환 지원

- ☑ **사업기간** : 2025. 2월~12월(공고 예정)
- ☑ **지원대상** : 기술전환을 희망하는 북구 소재 자동차부품기업
- ☑ **지원규모** : 5개사 정도
- ☑ **지원내용**
 - 미래차 부품전환 준비단계/실행단계로 구분 지원
 - 각 단계별 기업컨설팅 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문의처** : 울산테크노파크(☎219-8644)
※ 2025년 사업 계획 확정 시 지원내용 등 세부내용 별도 공고

06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

ULSAN METROPOLITAN CITY BUKGU

노동자들이 건강한 지역 산업구조 확보를 위해 취약 노동자 대상 건강진단 및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

- ☑ **사업기간** : 2025. 2월~11월(예정)
- ☑ **사업대상** : 취약노동자(소규모 사업장, 환경미화, 돌봄 노동자 등)
- ☑ **주요 사업내용**
 - 기초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4종) 등), 맞춤형 건강상담
 - 자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
- ☑ **협업기관** : 울산근로자건강센터,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북구 보건소
- ☑ **문의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241-8644)

07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법률상담 지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복귀 만들기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상담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호, 노동복지 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상담대상** : 복귀 주민, 노동자, 기업체, 노동조합 등

☑ **상담내용**

- 노동자 권익구제 및 보호를 위한 노동법률상담
- 노동조건 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연계
- 사업장 운영에 따른 노동법률 기본 교육 및 맞춤형 상담

☑ **문의처**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286-7990)



08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ULSAN METROPOLITAN CITY BUKGU

달천농공단지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청년 창업지원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 **위치** : 달천농공단지 내(농공단지1길 32-8)

☑ **지원대상** : 청년(예비)창업기업

☑ **주요시설**

- 본관 : 연면적 915.74㎡(지상 2층)
 - 1층 : 제조공간(3개소), 쇠부리대장간
 - 2층 : 사무공간(단독 2개소, 공유 4개소), 회의실, 교육장, 운영사무실
- 별관 : 108㎡, 울산메이커하우스

☑ **운영내용**

- 청년창업가 창업공간 지원 및 입주기업 성장프로그램 운영
- 창업자 교육사업(법률, 세무, 마케팅 등 창업 관련 교육)
- 초기 창업가 시제품 제작 지원「ULSAN MAKER HOUSE」운영

☑ **추진방법** : 위탁[(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 **문의처** : 청년창업지원센터(☎296-3201, 3255)

2025 **울산광역시 복구**

기업투자 지원제도



울산광역시 복구

경제일자리과

44248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Tel.052)241-7711~7715 Fax.052)241-7709